

# 환경분쟁조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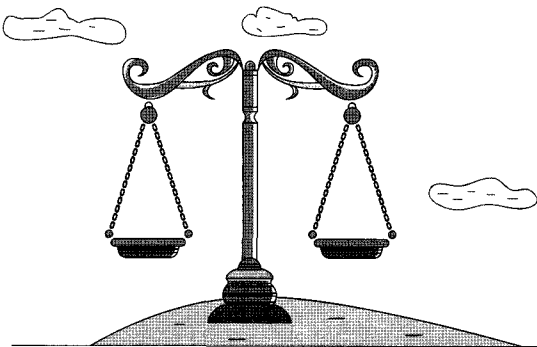
## 대기오염과 자연력이 결합된 경우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89다카1275 손해배상 판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특성상 대기, 물 또는 토양에 매개되어서 간접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대개는 자연력의 가공이 개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연력이 단지 공해물질을 피해자에게 운반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함에 있어 중요한 논의의 대상은 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력의 가공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예상치 못했었던 현저한 기온 내지 수온의 저하라든가 자연발화, 폭풍, 지진 등의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 배상의 범위가 전공해에 미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감축될 것인가, 만일 감축한다면 어떤 근거에서 부담을 감경할 것인가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살펴본다.

### 도입배경

원고는 서울과 의정부시간의 국도에서 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수락산 부근에서 1961년경부터 도봉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주목, 반송, 백송, 향나무, 옥향, 목련 등 고급관상수를 재배해 왔고, 피고는 1969년 10월경부터 위 도봉농장과 서북쪽으로 접한 곳에 모직류를 제조하는 공장을 설치하여 가동하여 오면서 그 연료로 방카씨유를 사용함으로써 그 연소과정에서 생성된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 및 낙진을 굴뚝을 통하여 대기 중에 배출시켰다. 그런데 1981년 3월경을 전후하여 원고 농장의 주목, 향나무, 반송, 백송 등 일부 관상수들이 갯숨조짐과 표피세포의 원형질분리로 누렇게 변색되어 잎이 떨어지고 수목 자체까지 고사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피고 공장의 굴뚝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 부근의 관상수들에게서 그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 도 기 영 | 법무법인 국민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동부지방법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 강동구상공회 이사  
 성남시 차과외사회 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 국제공익법률상담소 자문위원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협력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면책지원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간사,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서울중앙경찰서 보안협력위원

tel.02-470-8812 | viplawyer@hanmail.net | www.kookminlaw.com

### 주요쟁점

- 가.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문제
- 나.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동해이지만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그 수목의 성장에 장애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 공장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라. 공해사건에서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결합되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자연력의 기여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 마.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 판결요지

-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불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분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극난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 나.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한파로 인한 동해이지만 인근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위 농장에 도달됨으로 인하여 유황이 잎 내에 축적되어 수목의 성장에 장애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호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 공장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근 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면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
- 라. 공해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한파, 낙뢰와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결합되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마.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마치며

우리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공해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한파, 낙뢰와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결합되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공해와 자연재해가 공동원인이 된 경우의 배상 책임의 범위결정에 관하여 자연력제감설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은 다소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과실책임원칙을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특별규정이 있거나 가해자의 귀책사유에서 기인한 사유가 없는 한 자연력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결코 책임질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따라서 전손해중에서 자연력에 의한 손해는 이를 제감하여 손해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그밖에 그동안 환경오염피해사건의 논의 중점이 되었던 인과관계에 대하여 개연성 이론에 입각한 판례의 발전 방향은 정당하며, 판례가 지적하듯이 개연성 정도의 입증에 관하여 피고의 오염물질배출, 오염물질의 원고에의 도달경로, 피해의 발생사실이 입증되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도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 법적 가치판단에 상응하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적 입증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